

서울特別市麻浦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 및 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992. 7. 20
市民保健委員會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2년 5월 28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1992년 6월 1일
- 다. 상정일자: 제10회의회(임시회) 제3차위원회회('92.7.1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사회복지과장 길영환)

가. 제안이유

의료보호법의 전문개정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 변경
-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관련조항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변경
- 대불금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유조정
- 결산보고 및 결산잉여금 반납규정 삽입

3.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건재)

'91년 3월 8일 의료보호법의 전문개정으로 본조례와 개정된 법률의 조문이 서로 상이하여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본조례의 개정안은 적합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提出年月日: 1992年5月28日
提出者: 麻浦區廳長

1. 개정이유

의료보호법 전문개정으로 자치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법 규정에 맞도록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의료보호법 전문개정으로 목적 및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에 대한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및 기금출납공무원 명칭 변경
- 진료내역 관리가 전산화됨에 따라 수작업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카드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정내역 통보 규정 삽입
- 대불금액에 따른 상환횟수 조정 및 의료보호 정지 완화
- 대불금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유 조정
- 대불금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유 조정
- 결산보고 및 결산잉여금 반납규정 삽입

3. 관계법규

-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직할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
 - 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5조제2항
 -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한다.
 1. 전산기에 의한 보호대상자 관리업무
 2. 전산기에 의한 의료보호증 발급 업무
 3. 보호대상자의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 업무
-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
 - 의료보호기금에서 보호비용의 대불을 받은 자는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보호비용을 대불한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2회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의료보호법 제1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 (음·면·동장의 확인과 당해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條 “의료보호법 第9條”를 “의료보호법시

행규칙 第28條第1項”으로 한다.

第4條 第1項중 “第11條”를 “第21條”하고 “복지계장”를 “보험연금계장”으로 한다.

第7條 第1項중 “의료보호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를 “公務員 및 사립학교교직원외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로 한다.

第8條 第1項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第8條 第2項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하고 “1월내에”를 삭제하며 “납입기간을 정하여”다음에 “지체없이”를 추가하고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한다.

第9條 第1項중 第2號 내지 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보호법 第22條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第9條 第2項을 삭제한다.

第9條의2 (보고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9條의2(보고 등) 구청장은 會計年度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條例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1條(목적) 이 조례는 <u>의료보호법 제9조의</u> 규정에 의한 <u>의료보호기금</u>(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u>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u>(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第1條(목적) 이 조례는 <u>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u></p> <p>.....</p> <p>.....</p> <p>.....</p> <p>.....</p>
<p>第4條(회계공무원의 임명)</p> <p>①의료보호법 시행령 <u>제11조의</u> 규정에 의한 <u>기금출납명령관</u>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u>기금출납공무원</u>은 <u>복지계장</u>으로 한다.</p> <p>②생략</p>	<p>第4條(회계공무원의 임명)</p> <p>①<u>제21조</u>.....</p> <p>.....</p> <p>.....<u>보험연금계장</u>.....</p> <p>②현행과 같음</p>
<p>第7條(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u>의료보호대상자카드에</u> 각각 기재하고 <u>대불금상환 의무자</u>에게는 제 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第7條(지출) ①</p> <p>.....</p> <p>.....</p> <p>.....<u>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u>.....</p> <p>.....<u>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u>.....</p> <p>.....</p> <p>.....</p> <p>②현행과 같음</p>
<p>第8條(대불금의 상환 등)</p> <p>①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u>날로부터</u>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p>	<p>第8條(대불금의 상환등)</p> <p>①.....</p> <p>.....</p> <p>.....<u>날부터</u>.....</p> <p>.....</p> <p>.....</p> <p>.....</p>

현행	개정 (안)
<p>1. 10만원미만은 4회</p> <p>2.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은 8회</p> <p>3. 20만원이상은 12회</p> <p>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 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p> <p>③생략</p>	<p>1.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은 3회</p> <p>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p> <p>3.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은 12회</p> <p>②.....날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정지할 수 있다.</p> <p>③현행과 같음</p>
<p>第9條(결손처분)</p> <p>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p> <p>1. 의료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p> <p>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p> <p>3.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없다고 판단될 때</p> <p>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 보호대상자의 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p>	<p>第9條(결손처분)</p> <p>①.....</p> <p>1.</p> <p>2. 의료보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p> <p>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 (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할 때에 한 한다.</p> <p>②삭제</p>
<p>(신설)</p>	<p>第9條의2(보고 등)</p> <p>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p>